

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마라톤중소형주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기준일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일괄신고서	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3년 9월 22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9조의3(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)	기준일자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②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. 투자신탁명칭 -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 <생략>	②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. 투자신탁명칭 -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 A1(주식)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생략>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좌동>

		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1월1일 이후)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1월1일 이후)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3.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좌동> 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5. <생략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3. ~ 5. <좌동>
부칙		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, 적용한다.

◆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
간이투자설명서- [요약정보]- 투자비용/투자실적추이/ 운용전문인력		<생략>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<생략>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가. 운용전문인력			
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[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<신설>	[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<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> <u>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</u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<신설>	<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> <u>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</u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21.81%) <후략>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16.32%) <좌동>
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생략> ·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 ·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3부 1. 재무정보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		가. 요약재무정보 <신설>	가. 요약재무정보 <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> <u>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</u> <u>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u> <u>- 주식의 매매회전을</u>
제3부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 업무 (1) 주요 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생략> <신설>	<좌동> <u>-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
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.

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	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yfund.co.kr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yfund.co.kr)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황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
--	--	---	--